IB 2016-33

이슈브리프

2016. 9. 22

Ⅰ. 청년실업문제, 단발성 현금 지원으로 해결 불가능 / 1

Ⅱ. 코이카봉사단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적극 검토 / 7

Ⅲ. 유엔 대북제재(UNSC 2270) 6개월 : 현황 및 대책 / 13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Ⅰ. 청년실업문제, 단발성 현금 지원으로 해결 불가능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통해 장기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이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처음 시행하는 청년대상 현금급여 배당정책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 파악에 실패함. 특히 유럽·일본 등 선진국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 되어 청년고용증진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단기성 현금급여 지원 정책과는 정책 목표와 방향을 달리함. 선진국 사례로 보아 ▲단순한 현금 급여 지원이 아닌 청년고용정책의 명확한 목표 설정, ▲장기적 고용 성과 창출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개편, ▲공공-민간-시민사회간 3자 협력체계 구축, ▲일자리의 질 향상 등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함.

1. 서울시의 '청년수당'

○ 서울시, 최근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시 2020 청년정책 일환으로 청년수당 지급, 시행 중

- (적용대상)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29세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 者 해당) 가운데에서 선별적 선정
  - 선정위원회를 통해 3,000명 선정하여 지원하고 同제도가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둠

- (급여내용) 최장 6개월간 현금 급여 月50만원 지원
  - 영수증과 명세서 등을 활용하여 지출내역 확인으로 부정수급, 부정이용 방지시스템 구축

- (재원 및 관리운영) 100% 서울시 재원으로 운영되며, 서울시(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

○ 청년수당은 청년실업 탈출 목적으로 현금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금 사용의 오남용, 일자리 진입과의 연계성 미흡, 선별적 대상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

2.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 고용노동부,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의 추가적 지원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취업을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존부터 진행되어 온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정책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협력방안'의 일환으로 정장대여료, 사진촬영비, 교통비, 숙박비 등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취업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

○ 同사업은 서울시 청년수당과 '청년을 위한 복지정책의 한 종류'라는 취지 이외에는 ▲적용대상 ▲지원내용 ▲지원방식 ▲재원 등에서 전혀 다름

-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18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프로세스를 통해 일자리 매칭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현금 지원이 수반

- 따라서 서울시보다 현금지원액이 적다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으며,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의 목적 자체가 상이함

○ 특히, 서울시와 달리 구체적인 목적을 일자리로의 진입에 두고 있으므로 정책 목표가 명확하며 현실의 문제와 연계돼 있음

3. 각국의 청년보장정책 현황[1]

○ EU의 청년보장 프로그램

- 높은 청년실업률의 해소를 위해 2012. 12월 EU 회원국 전체에서 청년보장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제안

- 실직 또는 학업을 마친 지 4개월 이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재합류하게 하여 실직을 막고 장기 이탈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

• 즉각적 취업지원, 학교-직장 이행을 개선, 유럽구조기금 및 국내 자금을 활용하여 고용·사회·교육 서비스 현대화에 투자

- 다양한 청년집단의 수요 고려

• (스웨덴) 총 실직기간이 90일이 되면 바로 프로그램에 투입되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즉각 시행

• (핀란드)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을 중심으로 실직자 등록 이후부터 3개월 내에 수행 의무가 주어짐. 즉각적인 조기 개입이 성공의 열쇠라고 인식되어 모니터링을 통해 기관의 역량 향상에 주력

1) 구체적 내용은 국제노동브리프 5월호(한국노동연구원) 참조

○ 프랑스의 청년고용지원제도

- 청년 고용時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를 통해 일단 취업을 한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 주목
- 신기술의 발달은 청년고용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어, 견습 교육의 현대화에 주력하는 추세

○ 일본의 청년층 자립 도전 플랜

- 청년층을 통한 원스톱서비스센터를 별도로 운영, 인턴쉽·경력상담·직업소개 등으로부터 취업까지 총괄적인 취업을 위한 시스템 제공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자금 지원
- 매칭기능의 강화를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 일자리 보장에 주력

4. 정책적 제언

○ **현재 시행 중인 제도들의 조정, 유지 및 보완**

- 현재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대표적인 취업 성공 프로그램이며, 청년층도 그 대상에 포함됨
- 또 다른 정책을 중복적으로 만들어 대상의 선정과 목표부터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는 방법이 바람직

○ 청년고용정책의 중장기적 목표 및 정책 방향 수립

- 청년정책은 현금지원의 단기성 정책이 아닌 장기적 목표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최근 발의된 청년기본법上 청년은 15세~29세였으나 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연령은 15세~34세로 명시돼 있는 바, 이는 청년(고용)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데에서 혼란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됨

- 청년정책의 핵심과제는 '제대로 된' 일자리 진입의 해결과 고용문제의 해결임을 인지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자 하는 최대한의 연령까지를 청년으로 명시 필요

• 이에 34세까지 확대하여 일괄 통일할 것을 제안

○ 장기적 고용 성과 창출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개편

- 청년관련 복지 입법을 통해 정기적 욕구 및 실태 조사를 통한 상황 파악 필요

• 현재 청년은 복지의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명시화되어 있지 않은 복지사각지대에 위치

- 청년정책에의 조기 개입 필요

- 고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교육시스템, 그 이후 사회진출에 이르는 시스템의 통합적 개편 시급

• 장기적으로 직업훈련의 다양화, 구체화를 통해 노동시장 통합정책을 추진할 것이 요구됨

- 대학 서열화, 대기업 선호 등의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교육복지, 기업복지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청년정책담당기구에서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통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며 실현 모색

○ **공공·민간·시민사회의 3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독립적 지위의 청년정책전담기구 설치**

- 청년정책만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

- 청년고용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직접 당사자인 청년정책 관련기관들의 참여가 필수

  • 정책의 기본적 틀은 공공이 주도하여 설정하되 각 이해당사자가 다수이므로 청년단체,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NGO기관 등이 협력해야 할 사안임

○ **장기적인 일자리 유지를 위한 일자리의 질 향상**

- 노동시장통합지원은 결국 일자리의 질 향상을 통해 가능하므로, '청년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관건

  •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복지격차의 해소로 일부 해결이 가능하며, 고용보험기금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함

- 단발성 고용보장정책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일하고 결혼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고려한 장기적 비전의 청년정책 수립 긴요

[작성: 이윤진 연구위원 ☎02-2070-3316]

Ⅱ. 코이카봉사단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적극 검토

청년실업대책은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에도, 정부의 각종 청년실업대책이 미흡한 실정. 이에 코이카 청년봉사단을 통한 일자리 증가 대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매년 1,000명씩 늘리기, ▲관리조직의 확대 개편, ▲봉사단 경력 인정, ▲기본계획으로의 법제화 등의 추진이 필요함.

1. 심각한 청년실업 현황

○ 통계청 발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10.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1], 청년취업대책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됨

- 5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만명 이상 늘어났지만, 청년층 실업자는 18,000명이나 증가

- 정부도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일자리 중개인 역할까지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지만 별다른 효과가 보이지 않음

○ 유일호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7.27)에서 "구조개혁과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어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여, 청년실업이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언급[2]

- 이를 위해 "추경 등 경기활성화 노력과 함께 규제프리존 도입, 서비스

1) 중부일보(2016.7.22), "역대 최고치 경신한 청년실업률"
2) 조세일보(2016.7.27), "유일호, 청년실업 확대 추세 ... 일자리 늘리기 박차"

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입법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공급의 물꼬를 터 나갈 것"이라고 말함

2.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2016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토대를 놓는다"고 밝힘(7.18)

- 근로자간 격차 해소와 상생 촉진,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디딤돌 역할을 하는 고용서비스 혁신 등 세가지 목표 설정

- 현재 노동부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대책의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일학습 병행제) 학습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인턴제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턴취업 청년
-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 만 18~29세 인문 · 사회계열 대학 재학생, 유·무료 직업소개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청년고용촉진 비영리 법인 등
- (강소기업탐방 프로그램) 만 15~34세 이하 미취업자, 유·무료직업소개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청년고용촉진 비영리 법인 등
- (청년취업아카데미) 대학 재학생,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한 대학 졸업(또는 예정)자, 기업·사업주단체·대학·민간 훈련기관 등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
-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취업지원과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4년제, 전문대학)
-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규모, 업종과 관련 없이 모든 기업. 단, 중소

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일부업종(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외

- (해외취업지원,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확산)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
- (일-교육훈련-지역 연계 고졸인력 양성) 뿌리산업, 신성장 분야 등의 실전·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3개 특성화고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만 15세~34세의 청년 구직자 및 참여기업

○ 朴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일자리사업 개편방향을 확정(7.26)[3)]

- 이번 일자리사업 심층평가는 올해 2월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자리사업 전면 검토를 통해 사업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라는 박대통령 지시에 따라 진행

- 경쟁력없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과 두루누리(영세사업장에 지원하는 사회보험) 지원금을 대폭 줄이고,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
- 반면, 장기 미취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고, 취업 성과가 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
- 정부(25개 부처·청)의 일자리 사업은 총 196개, 올해 예산은 15조 8,000억원인데, 구조조정을 통해 전체 일자리 예산 중 10% 수준인 1조 6,000억원(두루누리 4,600억, 창업지원 3,800억, 직접일자리 3,600억, 사업주 훈련지원 2,000억, 그외 장려금 1,600억원 등)의 예산을 줄일 계획
- 즉, 수요자와 성과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바꾸고 내년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할 예정

3) 머니투데이(2016.6.28), "16조 일자리사업 전면 개편, 취업률 높은 사업에 예산폭탄"

3. 정책 제언 : 코이카봉사단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 청년일자리 창출 사례: 미국·일본·한국 청년봉사단 비교

- (분야) 미국은 공동체 경제개발을 포함하여 청년 위주로 포괄적, 일본은 문화 및 스포츠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운영

- (기간) 미국 2년 3개월, 일본과 한국은 1~2년

- (인원) 2014년 현재 미국 6,010명, 일본 1,614명, 한국 1,306명

- (예산) 미국 4,250억원, 일본 1,106억원, 한국 1,096억원

〈표〉 미국, 일본, 한국 청년봉사단 비교(2014년 기준)

	미국	일본	한국
대상	18세 이상 미국 국민	20세 이상 일본 국민	만 19세 이상 국민
분야	교육, 보건, 환경, 농업, 청소년 역량개발, 공동체 경제개발 등 6개 분야	농림수산, 직물, 수리, 건축, 위생, 교육, 문화 및 스포츠, 기획 및 행정 8대 분야	교육, 보건, 공공행정, 산업에너지, 농림수산 5대 분야
기간	2년 3개월	1~2년	1~2년
인원	6,010명	1,614명	1,306명
예산	4,250억원	1,106억원	1,096억원

주 1) 미국 자료는 www.peacecorps.gov, 일본 자료는 www.jica.go.jp
2) 일본의 경우 JICA에서 기술협력형태로 파견하고 있는 JOCV, Senior volunteers, Nikkei Volunteers 포함

☞ **따라서, 미국·일본의 청년봉사단의 사례로 보아 한국 코이카 청년봉사단의 경우 분야·기간·규모는 늘리고 청년 위주로 운영이 필요**

○ 각종 청년실업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코이카 청년봉사단를 통한 일자리 증가 적극 검토

- ▲향후 10년 동안 매년 1,000명씩 늘리기, ▲관리조직 확대 개편, ▲봉사단 경력 인정, ▲기본계획으로의 법제화 등 추진

○ 코이카 청년봉사단을 일자리 대책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적 뒷받침이 되는 직장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 세계화를 향한 디딤돌로 구축

- 우리나라와 수혜국의 언어·문화·경제 등을 충분히 숙지, '청년 준외교관'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봉사단원 자질을 제고

- 향후 10년 동안 매년 1,000명씩 늘려 10년 후에는 전체 10,000명 이상으로 구성,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s)에 필적할 정도로 육성(1명당 2,500만원으로 추정하면 매년 250억원 예산 소요)

○ 청년봉사단을 관리하는 코이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대규모 확대된 청년봉사단을 별도의 관리조직으로 설립

※ 코디네이터 1인당 봉사단원 수 : 한국 30.1명, 일본 14.8명, 미국 2.6명

○ 코이카 청년봉사단 활동 경력을 정부 및 공공기관 취업時 경력으로 인정받도록 관련 법제도 개정

※ 미국의 경우, 활동종료 단원의 귀국後 연방정부기관 채용時 1년간 비경쟁 특별채용 혜택 부여(美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 母法인 「한국국제협력단법」에 국제협력에 대한 기본계획을 규정, 그 속에 청년봉사단 공급계획 법제화

※ 현재, 2009년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던 각종 해외봉사사업을 월드프렌즈 코리아로 통합하여 코이카가 관리하고, 2014년 11월 「정부해외봉사단 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외교부 훈령)」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작성: 이환성 연구위원 ☎ 02-2070-3305]

Ⅲ. 유엔 대북제재('UNSC 2270') 6개월 : 현황 및 대책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중에도 지난 9.9일 제5차 핵실험을 감행. 그럼에도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270(2016)' 6개월(9.2)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일단' 그동안의 대북제재 이행 실태와 북한 대내외 상황 점검 및 대북제재의 실효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견지에서 우선 대북제재위원회의 체크리스트 적극 활용, 우리정부의 국제적 네트워크 기관을 모태로 한 국제적인 UN제재감시단 발족, 그리고 개별국 차원의 독자적 대북제재 강화 촉구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이 필요함.

1. 현황

○ 3.2일 'UN 안보리 결의 2270(UNSC 2270)'

- UNSC 2270에서는 보고서 제출 의무를 더욱 강화, UN 회원국들에게 결의 채택 90일 이내에 효율적인 제제 이행 방안과 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S/RES/2270(2016), 40항)

- 6.2일까지 이행보고서 제출시한이었으나, 이는 강제조항이 아닌 목표 시점으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고서가 제출됨

- 9.3일 현재 한·미·일·중·러를 포함하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10國 등 총 55개국이 제출, 140여국은 미제출

※ 미제출 국가들 대부분은 시간 부족과 대북 교역량이 적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음

2. 주요 국가 이행보고서 내용

○ 한국

- 6.16일자로 10페이지 분량의 이행보고서 제출

- 북한핵문제의 당사국으로서 모범적인 이행보고서 제출한 것으로 평가

- 유엔결의 2270의 각각의 해당 항목을 적시하고 이에 따른 이행사항을 보고하고 현재 상황을 기술
- 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 사치품 거래, 금융거래 등에 대해 “Currently all trad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suspended”

○ 미국

- 한국과 같은 날짜인 6.16일 19페이지 분량의 이행보고서 제출

- 보고서는 UN안보리 결의 2270 각 항목을 기술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또는 국내법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소상히 기술

- UN안보리 결의 2270의 북한 제재 항목에 따라 국내 행정명령 또는 국내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행조치를 기술
- 예를 들어 재무부 행정명령 1377호3항에 의거하여 무기 관련한 물품과 기술 지원 등을 금지하고 있음을 기술

○ 일본

- 7.14일 13페이지 분량으로 제출

- 일본의 보고서도 미국과 유사하게 관련 UN안보리 결의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과 해당 정부부서를 기술하고 이에 따른 조치 내용을 기술

- 일본의 이행보고서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이행조항 확인 '체크리스트' 즉 이행서식에 상세히 답변, 제출했다는 점에서 주목

※ 이 서식은 UN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회원국의 대북제재 이행 지원을 위해 5.24일 기존 대북제재 이행지원 통지문 2호를 갱신하면서 회원국들이 보고서 제출時 참고, 사용하도록 권고한 것임

※ 이 서식은 UN안보리 결의내용의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표형식으로 되어 있음

○ 러시아

- 1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로 5.27일 제출

- 대부분의 국가들이 5~10여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비하면 분량이 매우 적고(본문 15줄) 실제적인 활동내용이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매우 형식적인 보고서로 평가

- 단지 러시아정부는 제제와 관련한 행정당국에 해당 내용 공지와 함께 법적 절차에 따라 이행될 것이며, 특히 북한과의 금융거래는 결의에 따라 이행할 것임을 서술

○ 중국

- 북한 제재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국가 중 하나인 중국의 경우 제출 마감일을 지난 6.29일 5페이지 분량의 형식적 보고서를 제출

•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며, 유엔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확히 의사 표명하고,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지지함을 명시

-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 실적에 대한 언급 없이 유엔 결의 내용을 서술하며, 이를 위해 중국은 포괄적이고 다양한 체제들을 갖추고 있다고 기술

• 예컨대, 중국의 무역법에 따라 북한 관세당국은 북한으로부터 석탄, 철광, 희토류 등 광물 수입을 중단할 것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였음을 기술

- 예외조항을 명확히 하여 ㉠북한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경우, ㉡생산지가 북한 외부이거나 나진항으로부터 수출된 경우는 예외로 함을 적시

※ 나진항의 경우 러시아와 북한간의 무역으로 간주

- 금융 차단의 경우에도 유엔 결의의 따라 해당은행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임을 언급

• 단지 홍콩과 마카오는 一國兩制 원칙에 따라 별도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

※ 스위스는 6.2일부로 자국내 북한은행 계좌를 모두 폐쇄했음을 실적으로 보고

- 또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끝맺음

○ 앙골라

- 7.26일 총 4쪽 분량으로 작성된 보고서로서 북한의 우방이며, 특별한 북한과의 제재 현안이 없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그간의 활동을 보고

- UN안보리 결의 2270에 명시한 추방대상 외교관은 없는 상태이나 북한 외교관 김혁찬이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조사 대상자임에 주목, 이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

• 생년월일과 외교관 여권번호, 2월 아디스아바바를 통해 앙골라에 입국한 사실까지 명시

※ 김혁찬은 Washington Times에서 앙골라주재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이며, 2011년부터 초계정 18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엔진과 부품 수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도

- UN 안보리 감시대상인 '그린파일 필 무역회사'와 '베이징 뉴 테크놀로지 무역회사'에 대한 정보 확보 노력도 했으나 새로운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보고하는 등 그간의 노력도 소상히 기록

○ 키프로스

- 키프로스의 경우 가장 모범적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평가

• 제출시기도 6.3일로 시한을 하루 넘긴 시점이며, 분량에도 21페이지로 가장 길고 구체적임

-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 확산, 운송 및 이를 통한 국제사회 안보와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

- 키프로스 중앙은행을 통한 대북 금융 차단, 키프로스 경찰, 여행, 이민국을 통한 대북제재 명단의 개인 감시 등을 담고 있음

- 특히 2009년 키프로스 해상에서 북한화물선 '프린스 티(Prince T)'가 담배 밀수선으로 의심받고 키프로스 해양경찰에 의해 나포된 사례와 관련, 키프로스는 자국 선박을 통해 무기 및 관련 물자와 사치품 등을 운송하고 북한을 출·입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밝힘

3. 최근 북한 대내외 상황 진단

○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중국의 대북제재 이완

- 중국 해관총서의 국가별 月 무역액 통계(8.8일자)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6월 무역총액은 5억 377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 4억 6,042만 달러보다 9.4% 증가

• 북·중 교역액이 대북제재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

- 미·중간 패권경쟁이 가시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제재 전선에 이완 현상 발생

• 최근 남중국해 관련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결과(7.12)로 인하여 중국의 一帶一路의 한축(One Road, 一路)이 난관에 봉착

※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는 중국 영해다'라는 중국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

• 7월 라오스에서 개최된 ARF 회의에서 왕이 中외교부장은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와 한국 외교장관에 대한 무례한 제스처를 보이며, 의도적인 대조를 보임

○ 내부 200일 전투 등으로 제재 정국 돌파 노력

- 북한은 지난 5월 노동당 대회까지 70일 전투를 통해 주민들을 노력동원한 이후 다시금 200일 전투를 추진하며 주민 쥐어짜기 지속

- 최근의 북한주민의 강제노역은 김정일시대의 '천리마 속도전'에 비해 주민들의 불만이 더 클 가능성 농후

• 현재 북한주민들은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은 돈'이라는 인식 속에서 노력동원으로 돈벌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데 불만

○ 내부균열 징후

- 최근 駐英 북한 부대사 태영호의 제3국 망명 신청, 러시아 외화벌이 일꾼 잠적 등 북한 핵심 엘리트 이탈현상 가속화

• 지난달 北총정치국에서 김정은의 자금 관리 업무를 하던 장성급 인사와 외교관 등 4명이 탈출해 중국에서 제3국행 준비 중

• 기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유럽외교관과 동남아 무역기관 간부 10여명도 입국한 것으로 알려짐

- 이들은 대부분 달러 '계획분'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책이 두려워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진술

- 북한엘리트의 이탈에 대해 김정은은 더욱 혹독한 공포정치(공개처형 등)와 감시로 대응함으로써 악순환 연속 → 체제 안정성 저하

4. 평가 및 정책제언

○ 55國의 이행보고서 제출은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 반영

- 제재수단과 항목을 매우 구체적으로 수록한 'UNSC 2270'에 따라 제재 이행보고서도 대체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중국·러시아 등은 매우 형식적 보고서 제출)

• 이는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단시일 내에 55개 회원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도 북한의 도발이 국제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결과

○ 대북제재위원회 체크리스트 적극 활용 촉구

-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경우, 각국의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토록 유엔內에서 홍보 및 촉구 필요

• 일본과 키프로스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점이 주목됨

○ 국제적인 UN 대북제재감시단 발족 주도

- 한국정부의 국제적 네트워크 기관을 모태로 하여 UN안보리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발족 추진

- 예컨대, 세계 각국에 회원 조직이 돼 있는 민주평통을 모태로 시민

단체를 결성하여 국제적인 시민감시단 구성 추진

-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론과 동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제재 불이행 사실에 대해 각국 언론과 국제시민단체, UN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재 불이행 국가에 대한 견제 역할 강화

○ 개별국 제재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

-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중국·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합의로 볼 수 있음
  - UNSC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명분과 정당성 차원에서 중요

- 보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결국 유관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북한과의 이슈 영역별로 제재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한국, 미국, 일본이 유엔제재와 거의 동시에 개별제재를 추진했으며, 유럽국가도 동참하고 있음

- 특히, 한·미·일 3국이 싱가포르, 쿠웨이트, 몰타, 앙골라 등 4개국에게 대북 독자제재에 나설 것을 요청
  - 싱가포르 : 북한의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활동 거점국가. 북한은 싱가포르 금융기관에 다수 계좌를 보유, 이들 계좌를 이용해 연간 최대 4,000만달러(약 438억원)를 현금화
  - 쿠웨이트 : 수천명의 북한 노동자 근로 중
  - 몰타 : 유럽과 아프리카에 북한노동자를 파견하기 위한 거점
  - 앙골라 : 김일성시대부터 북한과 우호관계

[정리: 통일연구센터 ☎ 02-2070-3319]